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우형찬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조례안은 현행 ‘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’의 차고지비 항목 중 자가 및 기타 임대차고지 사용료 요율을 규정함으로써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